

# 채무조정규정

제 정 : 2024. 9. 25.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인금융채권”이라 함은 공사가 대위변제 등을 원인으로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말한다.
- “개인금융채무자”라 함은 대위변제 등을 원인으로 공사에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자(보증인 및 채무인수인을 포함)를 말한다.
- “채무조정”이란 채무감면, 분할상환 등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개인채무자보호법령등”이란 「개인채무자보호법」, 동법 시행령,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개인채무자보호법」, 「국내채권관리규정」, 「국내채권관리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계좌별 보증·보험부 대출원금(공사의 책임분담부분과 은행의 책임분담부분을 합한 대출을 말하며,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한도대출의 경우에는 그 한도금액을 말함) 기준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업무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4조(세부사항)**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채무자보호법령등 및 관련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2 장 채무조정

**제5조(채무조정의 안내)** 채무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개인금융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방법
- 공사의 채무조정 내용
- 채무조정 요청서 및 첨부서류
- 채무조정 요청의 접수 및 처리과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제도 관련 정보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제도 관련 정보
- 그 밖에 개인채무자보호법령등에 따른 정보

**제6조(채무조정시 고려사항)**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한다.

1. 개인금융채무자의 자산, 부채, 소득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변제능력
2.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및 비용
3. 공사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개인채무자보호법령등에 따라 채무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7조(채무조정 요청)**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고,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정구를 생략할 수 있다.

1. 채무조정 요청서
2. 채무조정안
3.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4.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5. 그 밖에 개인채무자보호법령등에 따라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제8조(채무조정 거절)** ① 개인금융채무자 채무조정 요청이 있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다.

1.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폐지·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7. 개인금융채무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보완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9.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0. 그 밖에 개인채무자보호법령등에 따른 경우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도 채무조정을 하는 것이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제9조(채무조정 처리)** ① 공사는 채무조정의 요청을 받은 경우 10영업일 이내(수정·보완 기간 제외)에 그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 전화 등의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며, 채무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1. 대위변제금, 총채무액 등 채무조정 적용 대상 채권에 관한 사항
2. 채무감면,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 내용에 관한 사항
3. 변제계획 불이행 시 안내에 관한 사항
4. 채무조정 합의해제 기준에 관한 사항
5. 채무조정업무 담당자, 연락처
6.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금 납입계좌 정보
7. 그 밖에 개인채무자보호법령등에 따른 사항

② 채무조정 심사는 「국내채권관리규정」 및 「국내채권관리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등 개인금융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채무조정 수단을 안내한다.

**제10조(채무조정 효력)**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채무조정안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의할 경우에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공사와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채무조정의 효력은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개인금융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에게도 미친다.

**제11조(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난 것으로 본다.

1. 공사가 제8조에 따라 채무조정 거절 사유에 해당하여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한 경우
2. 공사가 제9조에 따라 통지한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3. 공사가 제9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4.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1. 개인금융채무자가 제2항 각호의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3. 개인금융채무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개인금융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및 은닉,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개인금융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6.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 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7. 개인금융채무자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
  8. 그 밖에 개인채무자보호법령등에 따른 사유
- ② 공사는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6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1. 개인금융채무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재난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2. 개인금융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이 사고·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기타 입원한 경우
  3. 개인금융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혼인·장례
  4. 개인금융채무자의 실업(채무자의 사정으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는 제외), 무급휴직, 폐업(전업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 경우
  5.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유

### 제 3 장 보 칙

**제13조(전결권)** 이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 사항의 전결권은 인수보상위임전결규정을 따른다.

**제14조(담당부서)** 이 규정은 본사 국내채권관리업무 담당부서(또는 팀)가 운영하며, 본사의 국내채권관리업무 담당부서(또는 팀)장은 이 규정 준수여부에 대해 매년 점검·조치·평가를 시행한다.

**제15조(서식 등의 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관계서식의 제정 및 개폐는 본사의 국내채권 관리업무 담당부서(또는 팀)장에게 위임한다.

### 부 칙(제정)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